

신구조문대비표
「건축법 시행령」

건축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26762호, 2015.12.28., 타법개정]	건축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26909호, 2016.1.19., 일부개정]
제2조(정의)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15의2. (생 략) 16. “한옥”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 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, 볏짚, 목재,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. 17. ~ 18. (생 략)	제2조(정의) - - - - - - - - - - . 1. ~ 15의2. (현행과 같음) 16. “한옥”이란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. 17. ~ 18. (현행과 같음)
제5조의5(지방건축위원회)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두는 건축위원회(이하 “지방건축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. 1. ~ 4. (생 략) 5.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(이하 “건축조례”라 하며,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건축조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(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)에 관한 사항 6. ~ 8. (생 략) ② (생 략) ③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④ ~ ⑥ (생 략)	제5조의5(지방건축위원회) ① - - - - - - - - - - . 1. ~ 4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6. ~ 8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- - - - - - - - 150명 - - - - -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④ ~ ⑥ (현행과 같음)
제6조의2(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) ① (생 략) 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·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, 이 영 또는 건축조례(이하 “법령등”이라 한다)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.	제6조의2(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

14. 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<신 설> ⑥ ~ ⑩ (생 략)	14.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.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 ~ ⑩ (현행과 같음)
제47조(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)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, 노유자시설(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),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과 위락시설,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,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(정비공장만 해당한다)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~ 3. (생 략) <신 설> ② (생 략)	제47조(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) ①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② (현행과 같음)
제114조(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) 법 제79조제2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·임업용·축산업용 및 수산업용 창고를 말한다.	제114조(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) - - - - - - - - - - 400제곱미터 - - - - - - - 400제곱미터 - - - - - - - - - -
제118조(옹벽 등의 공작물예의 준용)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(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할 때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9. (생 략) <신 설> ② ~ ⑥ (생 략)	제118조(옹벽 등의 공작물예의 준용) ①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1. ~ 9. (현행과 같음) 11. 높이가 5미터를 넘는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19조(면적 등의 산정방법)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	제119조(면적 등의 산정방법) ① - - - - -

축물의 면적·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. 1. 2. (생략) 3. 바닥면적: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, 기둥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가. ~ 다. (생략) 라. <u>승강기</u>탑, 계단탑, 장식탑, 다락[층고(層高)가 1.5미터(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.8미터)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],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, 더스트슈트, 설비덕트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·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, 기름탱크, 냉각탑, 정화조, 도시가스 정압기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마. ~ 자. (생략) 차.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 제3호가목(6)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,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, 휠체어리프트, 경사로 또는 승강장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카. (생략) <u><신 설></u> 4. ~ 8. (생략) 9. 층수: <u>승강기</u>탑, 계단탑, 망루, 장식탑, 옥탑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(「주택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)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,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,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	1. 2. (현행과 같음) 3. - - - - -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라. <u>승강기</u>탑(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)- - - - - 마. ~ 자. (현행과 같음) 차.- - - - - <u>제3호가목(6) 및 같은 표 제4호가목(6)에 따른</u> - - - - - 카. (현행과 같음) 다.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4. ~ 8. (현행과 같음) 9. - - - <u>승강기</u>탑(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)- - - - -
---	--

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. ②·③ (생 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-	--